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연간 7일 이상의 년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속자 치단체장예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(안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의2)
- 나.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,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
- 다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(안 제22조제4호)
- 라. 형제자매 결혼시,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3)

□ 관계법령 :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262호)

- 붙임 : 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2. 신·구조문 대비표
3. 기타 참고자료 (관계법령 등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③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충청북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본문중 “공무원의 근속기간” 을 “공무원의 근속기간(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단서중 “특별한 사유가 있는” 을 “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” 으로 한다.

제22조본문중 “필요한 기간” 을 “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” 으로 하고,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때

제26조의2중 “도지사에게 신고하고” 를 삭제한다.

[별표3]의 결혼·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“형제자매” 를 각각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” 로 하며, 사망의 대상란중 “백숙부모” 를 “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